무고·강제추행·폭행

[인천지방법원 2011. 9. 6. 2011고단3204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김현우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최승철(국선)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